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6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조경태·이병진·이헌승

김성원 • 김정재 • 곽규택

백종헌 • 박성민 • 박수영

윤영석 • 서일준 • 강민국

유용원 · 김용태 · 박정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 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 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 2.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 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 료지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 <신 설></u>	제9조의2(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2.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